

충청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충청북도의회
산 업 경 제 위 원 회

충청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이종갑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24년 11월 15일

나. 회부일자 : 2024년 11월 15일

3. 제안이유

충청북도 치유농업의 체계적 확산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충청북도 치유농업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, 치유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활성화를 위해 지원 규정을 정비하여 충북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용어의 정의를 「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의 용어를 따르도록 규정 (안 제2조)
- 인용된 조례명의 오기를 바로잡고 치유농업 육성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비함 (안 제7조)
- 치유농업센터 설치 규정을 신설함 (안 제7조의2)

5. 검토의견 (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종섭)

가. 발의배경

- 충청북도는 '23년 12월 도내 치유 농장 육성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충북농업기술원 내에 충청북도 치유농업 센터를 개소하고 운영 중이지만 치유농업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
- 또한, 치유농업의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을 현행화하고 법제처의 조문 정비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
- 이에 충청북도 치유농업의 체계적 확산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충청북도 치유농업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, 치유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활성화를 위해 지원 규정과 기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

나. 개정안의 주요 조항에 대한 의견

- 안 제2조는 기존 정의 규정을 상위법 규정에 따르도록 개정한 것으로 현행 조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모두 「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의 정의를 그대로 재 기재하고 있는데,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에서는 법령의 정의와 동일한 내용의 정의를 두는 경우에는 법령의 용어정의 규정을 그대로 재 기재할 것이 아니라, “'00법' 제0조에 따른다“라고 표현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바 이를 반영한 것으로 적절한 개정이라고 판단됨
- 안 제7조는 기존의 치유농업 육성지원 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된

것을 충청북도의 현실에 맞게 현행화하여 육성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짐

- 안 제7조의2는 충청북도 치유농업의 체계적 확산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충청북도 치유농업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필요한 개정이라 할 수 있음

다. 종합의견

- (필요성) 충청북도 치유농업센터의 체계적인 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, 치유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활성화를 위해 지원 규정과 기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
- (타당성) 이에 따라 용어의 정의, 치유농장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충청북도 치유농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개정사항을 봤을 때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- (법적합성) 관련 법령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, 조문 체계와 구성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
- (종합의견) 이 조례의 개정으로 충청북도 치유농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도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 증진과 치유농업 운영자 역량강화 등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됨
향후 관계부서에서는 본 조례를 근거로 하여 체계적으로 치유농업 육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,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임